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4
----------	-----

제출년월일 : 2004년 6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1. 제안이유

-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 일치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취득 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법과 조례의 내용을 일치시키고, 서류송달의 방법을 등기우편, 하부기관을 통한 직접교부 송달하던 것을

⇒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서류송달의 방법 조항을 신설(제16조의2 제3항)하고,

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2003. 09. 25, 2003헌바16)의 취지에 맞추어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

(조례 제21조, 제40조의4, 제60조, 제61조, 제99조)

- 다.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제39조제3항)
- 라.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인상함.
(제40조의3제1항)
- 마.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시장이 결정고시 하던 것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6제3항에서 규정한 100분의 50으로 적용비율을 인상함
(제73조제1항 및 제5항)

3. 근 거 법령 : 지방세법(불임)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첨부: 1. 기타참고자료(준칙안) 1부

2. 입법예고(사본) 1부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제천시세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증 "(신고납부)"를 "(신고 및 납부)"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로 하고, "신고납부하여야야"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야"로 하며, 동항 단서 중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를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로 하고, 동조 제2항 본문 중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증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하며, 동조제4항증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로 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제3항증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를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로 한다.

제39조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

제40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

제40조의4중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전단중 “신고납부하여야”를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를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96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로 한다.

제60조중 “(신고납부 등)”을 “(신고 및 납부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항중 “신고납부하여야”를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로 한다.

제61조제1항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를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로 하고, 동조 제1항 제4호 본문중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을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으로 하고, 동호 단서중 “신고납부세액”을 “신고한 세액”으로 하며, 동항 제5호 본문 중 “신고납부”를 “신고”로 한다.

제73조제1항중 “지가를 말한다”를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영 제

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과세표준액 적용비율”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영 제194조의16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8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와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 제39조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의1(서류송달의 방법)①(생략) ②(생략) <u><신설></u></p>	<p>제16조의1(서류송달의 방법)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법 제51조의2제1항 다서에 정한 방법이라 <u>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u> <u>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하</u> <u>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u> <u>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u> <u>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u> <u>다.</u></p>
<p>제21조(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 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 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 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 <u>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u> <u>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u> <u>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u> <u>세액의 100분의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u> <u>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u> <u>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u> <u>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u> <u>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 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 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 ———— ———— ———— ———— <u>신고</u> <u>하고 납부하여야</u>———— ———— ———— ———— ———— <u>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u>———— ———— ———— ———— ———— ———— ②———— <u>산출세액</u>————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③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③ _____</p> <p>-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 _____</p> <p>_____</p> <p>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생략)</p> <p>②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 개시 5일전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와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p>제38(납기와 징수방법) ①(현행과 같음)</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①(생략) ②(생략)</p> <p>③자동차세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그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p>	<p>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①(현행과같음) ②(현행과같음) ③————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p>
<p><신설></p>	<p>④법 제19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p>
<p>④.(생략)</p>	<p>⑤(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40조의3(세율)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20으로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p>	<p>제40조의3(세율)①주행세의 세율은 법 제196조의1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175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4(신고납부 등)①주행세의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세의 납부기한 내에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시가 부과 할 주행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로 본다.</p> <p>②(생략)</p> <p>③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40조의4(신고 및 납부 등)①</p> <p>_____</p> <p>_____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p> <p>_____</p> <p>②(현행과 같음)</p> <p>③</p> <p>_____</p> <p>_____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는 법 제196조의1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p> <p>_____</p>
<p>제60조(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군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신고하고 납부하여야</p>

현 행	개 정 안
<p>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군수가 동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말한다)에 영 제194조의16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며,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신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p> <p>②~④ (생략)</p> <p><신설></p>	<p>① _____ _____ _____ _____ —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_____ _____ _____</p> <p>②~④ (현행과 같음)</p> <p>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은 영 제194조의1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기액이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제98조(납기) ①종업원합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②재산합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98조(징수방법과 납기) ①사업소세는 신고와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②종업원합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③재산합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p> <p>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1.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p> <p>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지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인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p>

【근거 법령】

지방세법

第1章 總則

第3條 (地方稅의 賦課·徵收에 관한 條例)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의 稅目, 課稅客體, 課稅標準, 稅率 기타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條例로 써 하여야 한다.

第11節 書類의 송달등

第51條의2 (書類送達의 方法) ① 第51條의 規定에 依한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登記郵便에 依한다. 다만, 이 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第120條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日[相續으로 인한 경우는 相續開始日부터, 失踪으로 인한 경우는 失踪宣告日부터 각각 6月(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각각 9月)]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取得稅 課稅物件을 취득한 후에 당해 課稅物件이 제11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規定에 의한 稅率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부터 30日이내에 第112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稅額에서 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法 또는 다른 法 습에 의하여 取得稅를 非課稅·課稅免除 또는 輕減받은 후에 당해 課稅物件이 取得稅 賦課對象 또는 追徵對象이 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事由發生日부터 30日이내에 당해 課稅標準額에 第112條의 規定에 의한 稅率을 적용하여 算出한 稅額[輕減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稅額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第2章 道稅

第4節 取得稅

第121條 (不足稅額의 追徵 및 加算稅)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取得稅納稅義務者가 取得稅課稅物件을 事實上取得한 후 그 取得日로부터 2年내에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賣却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分의 80을 加算한 金額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方法에 의하여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課稅物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1조의2(기한후 신고) ① 제120조에서 정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과고자 받기 전에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第3章 市·郡稅

第1節 住民稅

第177條의2 (신고 및 납부) ①法人稅割의 納稅義務者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事業場 所在地 市·郡別로 按分計算하여 당해 事業年度 종료일부터 4월(法人稅法 또는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稅額이決定 또는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 告知書의 納付期限, 申告期限을 延長하는 경우에는 그 延長된 申告期間의 滿了日, 修正申告를 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로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市長·郡守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更正 또는 修正申告로 인하여 事業年度別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總稅額이 당초에決定 또는 신고한 稅額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踏屬事業年度에 불구하고 更正告知日 또는 修正申告日이 속하는 事業年度分 法人稅割에 加減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는 第178條의 規定에 의하여 산출세액(特別徵收稅額을 제외한다)을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날까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1.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追加納付稅額을 修正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日
2. 所得稅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豫定申告하는 경우에는 그 申告期間의 滿了日
3. 삭제
4. 所得稅法에 의하여 所得稅를 신고납부하는 경우(第2號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滿了日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④所得稅割의 納稅義務者가 第17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割을 申告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納付稅額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不足稅額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稅額으로 하여 普通徵收의 방법에 의하여 徵收한다.

第178條 (所得割의 計算方法) ①所得割은 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거나 決定·更正된 所得稅·法人稅(源泉徵收된 所得稅 및 法人稅를 포함한다) 또는 農業所得稅로서 納稅義務者가 납부하여야 한 稅額의 總額에 第176條第2項의 稅率을 적용하여 計算한다. 다만, 제1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稅額은 이를 공제한다. ②所得稅法·法人稅法 또는 이 法의 農業所得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所得稅·法人稅·農業所得稅의 決定·更正 또는 所得稅法 第85條의2와 法人稅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으로 인하여 稅額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決定·更正 또는 還給稅額에 따라 所得割의 稅額을 還付 또는 追徵한다.

第3節 自動車稅

第196條의6 (納期와 徵收方法) ①自動車稅는 1臺當 年稅額을 2分의 1의 金額으로 分割한 稅額(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제196조의5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期分稅額)을 다음 各 期間내에 그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自動車 所有者로부터 自動車 所在地를 管轄하는 市·郡에서 徵收한다. 다만, 納稅義務者가 年稅額을 4분의 1의 금액(非營業用 乘用自動車의 경우에는 각 期分稅額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分割하여 납부하고자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1期分稅額의 2분의 1은 3月 16일부터 3月 31일까지의 기간중에, 第2期分 稅額의 2분의 1은 9月 16일부터 9月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分割하여 徵收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郡에서 納期중에 徵收할 稅額은 이미 分割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金額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 대상으로 되는 경우
3.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第196條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日割計算申請은 自動車所有權移轉登錄을 申請하는 때에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申請書에 所有權變動事實을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첨부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③自動車를 買賣·贈與 등으로 承繼取得한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日割計算申請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第196條의6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自動車稅를 제외한다)를 讓渡人이 所有한 기간에 해당하는 自動車稅의 納稅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第196條의6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納期가 있는 달의 1日 현재의 所有者에게 自動車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한 이후에 自動차를 買賣·贈與 등으로 承繼取得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6條의8 (隨時賦課時の 稅額計算<개정 1999.12.28>) ①自動차를 新規登錄하거나 抹消登錄한 경우에는 市·郡은 그 取得한 날 또는 사용을 禁止한 날이 속하는 期分의 自動車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金額을 그 稅額으로 하여 각각 徵收하여야 한다.

②課稅對象 自動차가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으로 되거나, 非課稅 또는 減免對象 自動차가 課稅對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期分의 自動車稅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日割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③제196조의7의 規定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 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自動車稅를 免除하지 아니한다

第3節의2 走行稅

第196條의17 (稅率) ①走行稅의 稅率은 課稅物品에 대한 交通稅額의 1,000분의 17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稅率은 交通稅率의 变動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稅率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이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第196條의18 (신고 및 납부 등) ①走行稅의 納稅義務者는 交通稅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稅의 納付期限내에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交通稅의 納稅地를 관할하는 市長·郡守를 각 市·郡이 賦課할 走行稅의 特別徵收義務者로 본다.

②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96조의17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③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한 走行稅(그 利子를 포함한다)를 다음달 25일까지 市·郡別 自動車稅徵收稅額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按分基準 및 방법에 따라 각 市·郡에 納入하여야 한다. 이 경우 特別徵收義務者는 徵收·納入에 따른 事務處理費 등을 行政自治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당 市·郡에 納入하여야 할 稅額에서 공제할 수 있다.

第4章 目的稅

第3節 事業所稅

第247條 (課稅標準) 事業所稅의 課稅標準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4.12.22>

1. 財產割

課稅基準日 現在의 事業所 延面積

2. 從業員割

從業員에게 지급한 당해 月給與의 總額

第248條 (稅率) ①事業所稅의 稅率은 다음 각號에 정하는 稅率을 초과할 수 없다.

1. 財產割 : 事業所 延面積 1제곱미터당 250원

2. 從業員割 : 從業員 紬與總額의 100분의 0.5

②市長·郡守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稅의 稅率을 第1項의 稅率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③廢水 또는 事業廢棄物등을 排出하는 事業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汚染物質排出事業所에 대하여는 第1項第1號의 稅率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신나개: 힘차개: 빛나개: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시군세개정조례안 참고자료 통보

지방세법이 개정(2003.12.30, 법률 제7013호)됨에 따라 시군세조례가 법과 일치하도록 부시장·부군수 회의(2004.02.03)에서 시달된 사항으로써 시군에서 참고 되도록 시군세조례개정안 및 청원군세조례개정안을 불임과 통보하오니 조례개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 시군세조례개정안 및 청원군세조례개정안 1부. 끝.



충청북도 지

수신자 청주시장(재무과장), 충주시장(세장과장), 세천시장(재무과장), 문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옥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익산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환경경제과장)

*충청북도지부지 이원주 서류담당 윤기관 서구회계과장 02/11 신원호

협조자 지방세무조사 예홍선 세무지도부상 유영석

시행 세무호계과-2020 (2004.02.11.) 접수 서설과-2821 (2004.02.11.)

우 380-75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로 156(상당구 문화동 89) / <http://www.ctb21.net>
전화 043) 220-2614 / 전传 043) 220-2619 / lwj2654@ctb21.net / 담당

【 개정 준칙안】

시·군세 조례개정 참고자료

- 이 자료는 2003년도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시·군세 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이 자료는 예시로 제시한 참고자료이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행 조례 및 개정 지방세법
령의 체계에 맞게 재정리하여 조례개정을 추
진하시기 바람

※ 제목: 시군세개정조례안 참고자료통보 (세무회계과-2020, 2004.2.1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④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u>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u></p>	<p>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④----- ----- ----- <u>산출세액-----산출세액-----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u></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생략)</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 까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신규 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와 과세 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p>	<p>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제40조의4(<u>신고납부</u>) 주행세 납세 의무자가 주행세를 <u>신고납부</u>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 · 2. (생 략)</p> <p>제60조(<u>신고납부 등</u>)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군에 <u>신고 납부하여야</u> 한다.</p> <p>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u>신고·납부하여야</u> 한</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4(<u>신고 및 납부</u>)----- -----<u>신고하고 납부</u>----- ----- ----- ----- ----- ----- ----- 1. · 2. (현행과 같음)</p> <p>제60조(<u>신고 및 납부 등</u>) ①----- ----- ----- ----- ----- ----- ----- <u>신고</u> <u>하고 납부하여야</u>----- ②----- ----- ----- ----- ----- ----- <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p>

현 행	개 정 안
	<u>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 ---신고한 세액----- ----- ----- -----.
5.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제조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납부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 -----신고-----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3조(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	제73조(과세표준) ①----- ----- ----- -----

현 행	개 정 안
<p>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군수에게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시장·군수에게 <u>신고·납부하여야</u> 한다.</p>	<p>제98조(납기) ①-----</p> <p>-----</p> <p>-----</p> <p><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p> <p>②-----</p> <p>-----</p> <p>-----</p> <p>-----<u>신고하고 납부하여야</u>---</p> <p>----</p>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3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입법예고사항】

* 제천시 지방정부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조례, 규칙 등 입법예고 사항을 안내합니다.

No. 78

102 Date : 05 18 2004 9:11AM Hit : 131

이 름 : 세정과

파일첨부 1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hwp (45 KB), Download : 21

제 목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제천시공고 제 2004 -242호

제천시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18.

제 천 시 장

제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례명 : 제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과 조례의 내용 일치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기분으로 매년 부과고지하는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전자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주민세 등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차세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주요개정내용

불임과 같음

의견제출

이 제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7일까지 제천시장(참조: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번호 전화640-5261, FAX 640-5259)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